#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

2018. 9. 21.

국토교통부

## 목 차

I. 추진배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Ⅱ. 추진방향3
Ⅲ.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한 30만호 추가 공급 … 4
Ⅳ.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조기 공급 ············ 10
♡.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13
<별첨> 1차 신규택지 참고 자료 17

#### Ⅰ. 추진 배경

#### ◈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

#### ①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은 원활히 공급 중

- □ 서울 및 수도권의 **주택 인허가, 분양, 준공물량\***은 지난 10년 ('08~'17)에 비해 **최근 3년**('15~'17)간 **큰 폭**으로 **증가** 
  - \* 10년평균比 3년평균 증가율 : (수도권) 인허가29.8%↑, **분양 42.5%↑**, 준공 20.3%↑ (서 울) **인허가 26.8%**↑, 분양 23.7%↑, 준공 14.8%↑

#### < 수도권 주택공급 추이(만호) >

#### < 서울 주택공급 추이(만호) >





○ 오피스텔 인허가·준공 물량도 최근 3년간 증가추세가 뚜렷

< 수도권(서울) 오피스텔 인허가 및 준공(만호)>

	'12	'13	'14	'15	'16	'17
인허가	3.3 (1.7)	2.1 (1.0)	2.9 (1.6)	6.4 (1.9)	8.7 (2.1)	9.4 (3.0)
준공	1.1 (0.5)	2.6 (1.5)	2.9 (1.5)	3.2 (1.6)	4.4 (1.9)	5.9 (2.7)

- □ 이에 반해, 가구는 1인 가구 위주로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서울\*의 경우 최근 2인 이상 가구수는 감소추세
  - \* 1인가구는 아파트 거주비중이 낮고(16.5%). 오피스텔 등 비주거거주비중이 높음(20.3%)

< '15년 대비 '17년 가구수 추이(만호) 및 연평균 증감율>

	수도권				서울		
	총가구수	1인	2인이상	총가구수	1인	2인이상	
'15년	921.5	238.6	682.9	378.4	111.6	266.9	
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949.6	257.2	692.5	381.3	118.1	263.3	
	(+28.2)	(+18.6)	(+9.6)	(+2.9)	(+6.5)	(-3.6)	
年 증감율	1.5%	3.9%	0.7%	0.4%	2.9%	-0.7%	

#### ② 향후 5년간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수급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

- □ 서울 및 수도권의 향후 주택공급은 수요 추정치를 상회할 전망
  - (수요) 가구, 소득, 멸실 요인을 감안한 연평균 신규주택수요는 수도권은 연 22.1만호, 서울은 연 5.5만호로 추정(국토연구원)
  - (**공급**) 旣 분양물량, 정비사업 진행정도, 인허가 전망 등을 감안한 향후 5년간 공급물량은 **수도권 연 26.3만호**, **서울 연 7.2만호**로 추정

< 향후 5년간 서울의 신규주택수요·공급(입주기준) 전망(단위:만호) >

구 :	궤	′18년 <sup>e</sup>	′19년°	′20년 <sup>®</sup>	′21년°	′22년 <sup>®</sup>	연평균
수도권	수요	22.1	22.2	22.2	22.4	21.8	22.1
十工전	공급	32.4	28.1	27.0	22.6	21.5	26.3
서울	수요	5.5	5.5	5.6	5.6	5.5	5.5
시 글	공급	7.4	8.0	7.0	6.4	7.0	7.2

- □ 서울시 내 정비 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
  - 서울시 내 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·재건축 사업장이 502개이고,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도 104개에 이르는 등 정상 추진 중

< 서울시 내 사업단계별 정비사업 추진현황 >

구역지정~조합설립인가	역지정~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~미착공		합계
265개 (14.7만호)	133개 (10.6만호)	104개 (8.4만호)	502개 (33.7만호)

#### ◈ 안정적 수급 기반 위에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 지속 필요

- □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**주택보급률은 꾸준히 개선**되고 있으나, **수도권**은 전국('16년 기준 102.6%) 대비 여전히 **낮은 수준** 
  - \* 주택보급률(%) 추이(서울) : '10년 96.4(94.4) → '13년 97.3(95.1)→ '16년 98.2(96.3)
  -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**내집 마련 불안감**도 일부 작용
- □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, 도심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'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플랜 제시 필요

#### Ⅱ. 추진 방향

- ◆ "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"될 수 있도록,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(30만호) 확보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
- ◈ 신혼희망타운(10만호)은 사업 단축 등을 통해 금년부터 분양착수
- ◈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

#### ◈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공급

#### 신규택지 확보

#### <1> 1차 17곳, 3.5만호 선정

- ㅇ (서울) 11곳 약 10,000호, (경기) 5곳 17,160호, (인천) 1곳 7,800호
- <2> 향후 26.5만호 택지확보 계획
  -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~5개소 20만호, 중소규모 택지 약 6.5만호 공급

#### 주택공급

- ①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'21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 공급
- ② 전매제한 강화(최대 8년), 거주의무기간(5년) 등 투기목적 주택구입 방지

#### 투기방지

① 모니터링 강화, 개발행위 제한, 투기단속반 투입,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지정

#### ◈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

조기 공급

- ① (**부지확보 실적**) 전국 목표 10만호 중 택지 8.0만호 확보 완료(확보율 80%) 수도권 공급목표 7만호 중 택지 6.0만호 확보 완료(확보율 86%)
- ② (조기공급) 올해 첫 분양(위례, 평택 고덕), '22년까지 수도권 5.4만호 분양

#### ◈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

#### 도시규제 등 정비

- <1>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상업지역 등 주택공급 확대
- ① (**상업지역**) 주거용 비율 80%로 상향, 주거용 용적률 상향(400→600%)
- ② (**준주거지역**) 초과용적률의 50%이상 임대 공급시 용적률 상향(400→500%)
- <2>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제도 개선
- ① (대상확대) 기부채납 시설을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
- <3> 역세권 분양·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
- ① (역세권 종상향)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추진
- ② (주차장 설치기준)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 확대 검토

#### 소규모 정비 활성화

- ① (**인센티브 확대**) 공적임대주택이 세대수의 20%인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, 기반시설 설치시에도 인센티브 제공
- ② (요건 완화) 사업 대상에 연립주택 추가 및 가로구역 인정 요건 완화
- ③ (금융지원 등) 일반분양분 전량 매입 임대리츠 설립 및 기금 융자기간 연장

#### Ⅲ.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공급

#### 1. 기존 수도권 택지 확보 현황

- □ 기존 수도권 내 공공택지는 약 54.2만호 규모를 기 확보
  - '17년말 기준 지구가 지정되어 주택공급이 가능한 **수도권 내 공공** 택지는 약 48만호 규모
  - **주거복지로드맵**('17.11), **청년·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**('18.7)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**14개 신규 지구**, **6.2만호** 입지도 확보

#### 2. 택지확보 추진계획

#### <1> 1차 17곳, 3.5만호 선정

- □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<u>중·소규모 택지 17곳,</u> <u>약 3.5만호 선정</u>
  - (서울) 서울시에 따르면, 도심지역에 舊 성동구치소, 개포동 재건 마을(1,640호)\* 등 11곳, 약 1만호
    - \*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(8,642호)은 사업구역 지정, 사전협의 등 이행 후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서울시가 공개 예정
  - (경기) 광명, 의왕, 성남, 시흥, 의정부 등 5곳, 17,160호
    - \*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. 철도(지하철)·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
  - (인천) 검암 역세권 1곳, 7,800호
    - \* 인천 지하철 2호선 등 교통이 우수하고, 청라지구 주변 젊은층의 주거 수요 풍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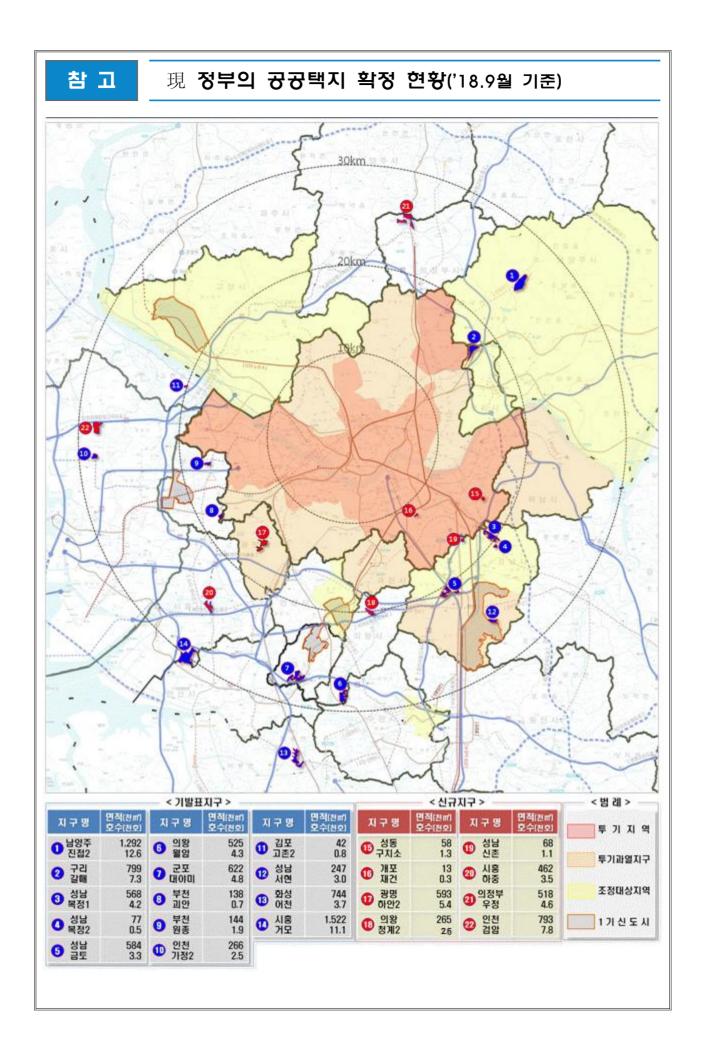
지구명		<b>면적</b> (천m²)	주 <b>택수</b> (호)	입지특성 등
	합 계	3,112	35,242	
	소계	413	10,282	
서울 (SH)	舊성동구치소	52	1,300	● 오금역(지하철 3, 5호선 교차)과 도보 2분 거리(200m)
(011)	개포동 재건마을	13	340	● 매봉역(지하철 3호선) 1km 거리
	비공개 9개 부지	348	8,642	● 사전절차 이행 후 서울시가 공개
	소계	1,906	17,160	
	광명 하안2	593	5,400	● 광명IC (제2경인고속도로) 2.5km, 금천IC (서해안고속도로) 2.0km 거리
경기 (LH)	의왕 청계2	265	2,560	● 인덕원역(지하철 4호선) 2.0km 거리, 국지도 57호선 연접
(LH)	성남 신촌	68	1,100	● 수서역(SRT, 3호선) 3km, 복정역(지하철 8호선,분당선) 1.8km 거리 ● 송패(C(서울 외곽고속도로) 2.0km 인접
	시흥 하중	462	3,500	● 신현역·시흥시청역(소사-원시선) 2km 거리
	의정부 우정	518	4,600	● 녹양역(지하철 1호선) 연접
인천 (인천도공)	검암 역세권	793	7,800	● 검암역(공항철도, 인천 2호선) 연접, 검바위역 (인천 2호선) 1km 거리 ● 인근에 청라지구가 입지(5km 이내)

#### □ 추진일정

- 9.21일 주민공람 시작, 전략환경영향평가,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'19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
- '19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→ '21년 주택공급 개시

< 1차 신규택지의 연도별 주택 공급 계획(천호) >

구 분	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 이후
주택수	35.2	4.7	4.9	6.9	5.8	12.9



#### <2> 향후 택지확보 추진계획

#### □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약 20만호 공급

- **서울과 인접한**(서울 1기 신도시 사이) **지역에** 1백만평 이상 **대규모 택지 4~5개소 조성**(1~2개소는 연내 발표)
- **조성방향** : 인프라, 교통망,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 **공간**으로 조성하여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 분산 수용
- (일자리 창출)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전략산업 등 유치
- (광역교통망 계획 연계) 도로,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서울 및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 제고
  - \*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외에도 상하수도. 방재시설 등 인프라 확충
- (스마트시티 연계) 스마트홈, IoT, 친환경 에너지 등을 반영하여 에너지 절감, 교통정체 해소 등 도시 관리 효율성을 제고
- (주거기능과 생활서비스 결합) 보육·육아 서비스, 문화·복지시설 등 생활서비스 연계
  - \* 신혼희망타운, 청년·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 등 주거와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결합한 방식의 주택단지를 적극 반영

#### □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약 6.5만호 공급

○ 대규모 택지 조성과 병행하여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하여, 도심내 유휴부지, 군유휴시설,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

- (도심내 유휴부지) 유휴 공공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기존 차고지, 철도부지나 역세권 등을 고밀·복합개발
- (군유휴시설) 이전대상인 군부대, 군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하거나 도심내 군관사 등을 고밀개발
- (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) '20.7월부터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학교, 공원 부지 등)을 택지로 활용
  - \* (예시) 장기 미조성 도시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70%를 공원으로 조성하고, 나머지 30%는 택지로 활용

#### □ 서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활용 검토

-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되,
-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,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
  - \* GB 평가등급: 1~2등급은 보존, 3~5등급은 개발가능

#### □ 추진계획

## ☞ 연내 약 10만호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고, '19.6월까지 나머지 16.5만호 선정·발표 추진

#### < 수도권 지역별 추가 확보계획 >

구 분	서울	인천	경기	계
대규모 택지	_	2만호	18만호	20만호
중소규모 택지	2만호 + α	0.5만호	4만호	6.5만호 + α
계	2만호 + α	2.5만호	22만호	26.5만호 + α

\*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## 3. 주택 공급 계획

- □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성 강화
  - **공공주택 위주** (공공임대 35%이상)로 공급하되, **임대 분양 비율**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**탄력적**으로 적용
  -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(최대 6→8년), 거주의무(최대 3→5년) 요건 등 강화
    - \* 주택법 시행령(전매제한)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(거주의무) 개정('18.11월)
- □ 보상 등 일정 고려시, '21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가능

< 30만호 신규주택의 연차별 공급(분양) 계획안(만호) >

구 분	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
주택수	30	0.5	2.0	5.0	8.0	14.5

\* 공급시기는 지역여건,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

#### 4. 투기 방지 방안

- □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, 토지거래량 등을 **모니터링**하고, 주민공람 공고 즉시 **개발행위 제한**\* 및 **불법행위 방지**\*\*
  - \*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**건축**, **공작물의 설치, 토지 형질 변경** 등 행위 **제한** (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)
  - \*\* **항공사진** 및 **비디오** 촬영, **현장관리인력 배치**를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 예방·단속
- □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 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,
  - 지자체와 협의하여 <u>토지거래허가구역\*</u> 또는 <u>개발행위 허가제한</u> <u>지역\*\*</u>을 지정하여 투기 수요 차단
    - \*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(3년 연장가능)
    - \*\* 3년간 건축물,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제한(2년 연장가능)

#### Ⅳ.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조기 공급

- ◆ 신혼희망타운(분양, 임대)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도 제고
  - 우수한 **입지**에 **신규택지**를 확보하여,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**신혼희망타운 공급**(10만호 사업승인)을 차질 없이 추진

#### <1> 신혼희망타운 추진현황

#### □ 신혼희망타운 공급 목표

○ 주거복지로드맵 및 청년·신혼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**신혼희망타운 10만호**(수도권 7만호) **공급**(사업승인) 계획 발표

#### ≪ 신혼희망타운 개요 ≫

- (기본개요)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층간소음 저감, 단지내 단차 제거 등 육아· 보육에 특화되고,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
- o (주택유형)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임대형(분환전환형)도 선택 가능
- ㅇ (대출지원) 1%대 대출지원을 통해 초기부담을 경감

#### □ 부지확보 실적 및 계획

- (실적) 전국 **공급목표 10.0만호** 중 80%인 **8.0만호**를 **확보 완료** 이 중 기존택지는 3.9만호, 신규택지는 4.1만호
- 수도권은 목표 <u>7만호 중 6.0만호를 확보</u>하여 목표 달성률 86%

<	신혼희망타운	부지확보	현황(만호)	>
---	--------	------	--------	---

구 분	고그모고		추가확보		
十 世	공급목표	계	기존택지	신규택지	계획물량
계	10.0	8.0	3.9	4.1	2.0
수도권	7.0	6.0	2.8	3.2	1.0
지 방	3.0	2.0	1.1	0.9	1.0

○ (계획) 연말까지 2.0만호(수도권 1.0만호) 택지 추가 확보 완료 추진

#### <2>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분양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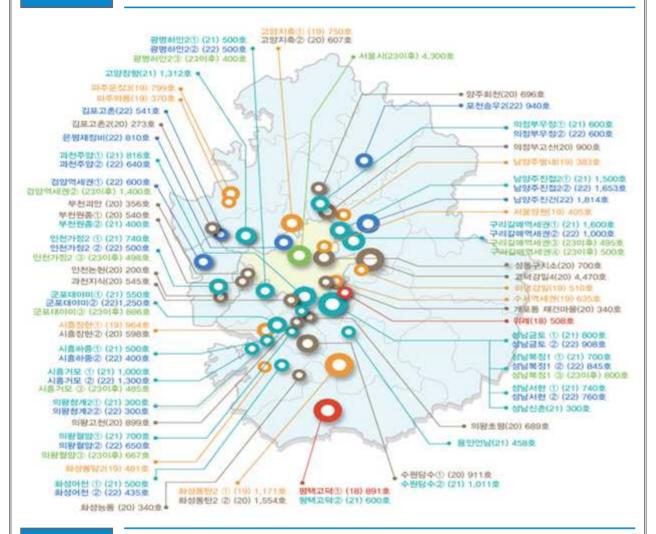
- □ 금년 12월 위례,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 실시
  - 수도권은 '19년에 0.6만호를 포함하여 '22년까지 5.4만호 분양
    - \* 지방은 '19년 4천호를 포함하여 '22년까지 1.8만호 분양 (☞p.12 참고)
- □ 사업승인·실시설계 병행추진 등 <u>일정단축을 통해 최대한 신속 추진</u> (신규지구는 보상 등 일정을 감안할 때 '21년 이후부터 분양 가능)

구 분	′18년	′19년	′20년	′21년	′22년	′23년이후
합계 (80,439)	1,399	10,522	15,100	25,207	19,371	8,840
수도권 (59,757)	1,399	6,468	12,646	16,327	16,786	6,131
서울 (6,428)		2/4분기 서울양원(405) 4/4분기 수서역세권(635)	4/4분기 <i>고덕강일</i> (3,538)	성동구치소 (700)	은평재정비 (810) 개포동재건마을 (340)	* 이탤릭체는 서울시 제안
경기 (49,391)	(12월)위례 (508) (12월)평택고덕① (891)	3/4분기 화성동탄2①(1,171) 고양지축①(750) 남양주별내(383) 시흥장현①(964) 하남감일(510) 4/4분기 파주운정3(799) 파주와동(370) 화성봉담2(481)	1/4분기 양주회천(696) 2/4분기 고양지축②(607) 의정부고산(900) 화성동탄2②(1,554) 3/4분기 시흥장현②(598) 4/4분기 과천지식(545) 부천괴안(356) 부천의안(356) 부천원종①(540) 수원당수①(911) 의왕고천(899) 김포고촌2(273) 의왕초평(689) 화성능동(340)	고양장항(1,312) 과천주암①(816) 수원당수②(1,011) 용인언남(458) 평택고덕②(600) 남양주진접2① (1,500) 부천원종②(400) 군포대야미① (550) 구리갈매역세권① (1,600) 의왕월암①(700) 성남극토①(800) 성남복정1①(700) 성남서현①(740) 화성어천①(500) 시흥거모①(1,000) 광명하안2①(500호) 의왕청계2①(300호) 서흥하중①(500호) 의정부우정①(600호)	과천주암②(640) 김포고촌(541) 남양주진건 (1,814) 포천송우2(940) 남양주진접2② (1,653) 군포대야미② (1,250) 구리갈매역세권② (1,000) 의왕월암②(650) 성남금토②(908) 성남복정1②(845) 성남서현②(760) 화성어천②(435) 시흥거모②(1,300) 광명하안2②(500호) 의왕청계2② (300호) 시흥하중② (400호)	군포대야미③ (886) 구리갈매역세권③ (995) 의왕월암③ (667) 성남복정1③ (800) 시흥거모③ (485) 광명하안2③ (400호)
인천 (3,938)			3/4분기 인천논현2(200)	인천가정2① (740)	인천가정2② (500) 검암역세권① (600호)	인천가정2③ (498) 검암역세권② (1,400호)

- \* 동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이 2회 이상인 경우 ①②③으로 구분표기
- \* 1.0만호 택지확보가 추가 되는대로 공급계획에 반영
- \* 지구계획 수립, 사업계획 승인 등 과정에서 구체적인 물량 및 시기 변경 가능

#### 참고

####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공급 예정지 지도 \* 공급지구(분양년도) 호수



#### 참 고

#### 지방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

구 분	′18년	′19년	′20년	′21년	′22년	′23년이후
합계 (20,682)	-	4,054	2,454	8,880	2,585	2,709
		4/4분기 아산탕정① (1,114) 부산기장(659) 행복도시(500) 완주삼봉(881) 양산사송①(900)	2/4분기 대구율하1(250) 대전천동(300) 아산탕정②(425) 양산사송②(479) 3/4분기 울산다운2 (1,000)	부산명지(1,018) 남원주역세권 (606) 원주무실(862) 청주지북(810) 전주역세권(700) 김해진례(631) 경산대임①(682) 대구연호①(600) 울산태화강변① (460) 광주선운2① (550) 부산내리2(500) 창원명곡(670) 밀양부북(466) 창원태백(100) 제주김녕(225)	경산평산 (300) 경산대임② (682) 대구연호② (600) 울산태화강변② (453) 광주선운2② (550)	경산대임③ (1,365) 대구연호③ (719) 광주선운2③ (625)

- \* 공급시기는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조정 가능
- \* 1.0만호 택지확보가 추가 되는대로 공급계획에 반영

## ♡.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

#### 1.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규제 등 정비

#### <1> 도시규제 완화

#### ① 서울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 및 용적률 상향

- □ (현행) 서울시는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20%~30% 이상,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 400% 이하로 규정
  - \* 국토계획법상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은 **상업지역의 경우 연면적의** 90% 미만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위임
- □ (개선)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<u>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</u>
   <u>20% 이상으로 하향</u>하고, <u>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상향(400→600%)</u>
   (′18.下, 서울시 도시조례 개정 추진)
  - \*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
  - 증가된 용적률의 50%는 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

#### ②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

- □ (현행)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% 이하\*로 규정
  - \* 국토계획법상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인 500%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
  - 다만,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% 이상 건축시 용적률을 500% 부여
- □ (개선) 역세권 뿐 아니라 <u>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</u>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% 이상 건축 시 <u>용적률 500% 부여</u>
   (′18. 下, 서울시 도시조례 개정 추진)
  - \*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

#### <2>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 포함

- □ (현행)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등의완화 적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이 '기반시설'로 한정
- □ (개선)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개선 (′18.下, 「국토계획법 시행령」 개정 추진)
  -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 확대 가능

#### <3>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

#### ①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

- □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<u>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</u>하여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 확대
  - 증가된 용적률의 50%는 임대주택 등\*으로 공공기여 의무화
    - \* 임대주택(최대 30%), 창업임대오피스, 공공임대상가, 문화시설, 공용주차장 등
  - '19년 시범사업 추진(5개소) 후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(서울시 자체 사업)

#### ② 역세권 청년임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

- □ 역세권 소형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된 세대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(현행 50%) 확대 검토 (′18.下,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)
  - \* 차량 미보유자 등에 한하여 임차인으로 선정하고, 사후 운영을 관리하는 등 서울시가 지역 주차난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완화
  - 또한,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결정 시 역세권 임대 <u>부설주차장 외부 개방 허용</u> (18.下. 민간임대법 시행령 개정)
    - \* 주차장 개방에 따른 수익을 관리비 등에 활용하여 입주자 부담 경감 가능

#### 2.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

#### <1> 공적임대 공급시 인센티브 개선

- □ (현행) 연면적 20% 이상 공적임대 공급 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나, 인센티브 대비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\*
  - \* 예) 용적률혜택(50%)=법적상한용적률(250%) 조례 용적률(200%) 임대의무용적률(50%) = 법적상한용적률(250%) × 20/100 ⇒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도 일반분양물량 증가가 없어 효과 반감
- □ (개선) 소규모정비를 통한 공적임대 확대를 위해 <u>연면적 또는 세대수</u>20% 이상 공적임대 공급 시 <u>용적률 혜택 부여(</u>′18. 下,「빈집법」개정)

#### <2> 기반시설 인센티브 부여

- □ (현행)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나, 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
- □ (개선)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정비사업으로 <u>기반시설 부지</u>제공 또는 설치 시 용적률 혜택 부여 ('18. 下,「빈집법」개정)
  - 도로 등 기반시설 미흡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용적률 상 손해가 없도록 하여 사업 활성화 유도

#### <3>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확대

- □ (현행) 연립주택은 단독으로 소규모재건축이 가능하나, 20세대 미만소규모 연립은 사업성이 부족해 소규모 정비가 어려운 상황
- □ (개선) <u>20세대 미만 연립</u>도 인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과 **함께 정비**할 수 있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\* **대상 추가** (\*18. 下, 「빈집법」 개정)
  - \* 20세대 미만 단독·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통합정비

#### <4> 가로구역 요건 완화

- □ (현행)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가로구역(Block)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
  - 다만, 대부분의 노후 주거지는 도로 폭이 좁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어려움
- □ (현행)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<u>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 예정</u>\*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 추진
  - \* 다만, 사업부지를 둘러싼 도로 중 최소 1면은 6m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

#### <5>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

- □ (현행)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LH에서 일부만 매입\*하여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
  - \* (가로주택) 일반분양 주택수의 30%, (자율주택) 일반분양 주택수의 100%
- □ (개선) 사전에 조합과 협의된 경우에는 **일반분양주택을 전량** 매입\*할 수 있는 <u>『소규모정비 임대리츠』설립 추진(</u>'18.12)
  -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가 주민합의체, 조합 등이 건설한 자산을 선매입하여 10년간 임대운영 후 분양전환
    - \* 설계·시공은 LH 또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

#### <6> 자율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조건 개선

- □ (현행)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기금 융자 시 준공시점에 상환하고있어 사업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공지원주택 공급 저조
- □ (개선)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% 이상 공공지원주택 공급 시 융자기간 연장\*(5년→10년)
  - \* 융자기간(10년) = 건설기간(2년) + 공공지원주택 임대기간(8년)

# [별 첨] 1차 신규택지 참고자료

## 舊 성동구치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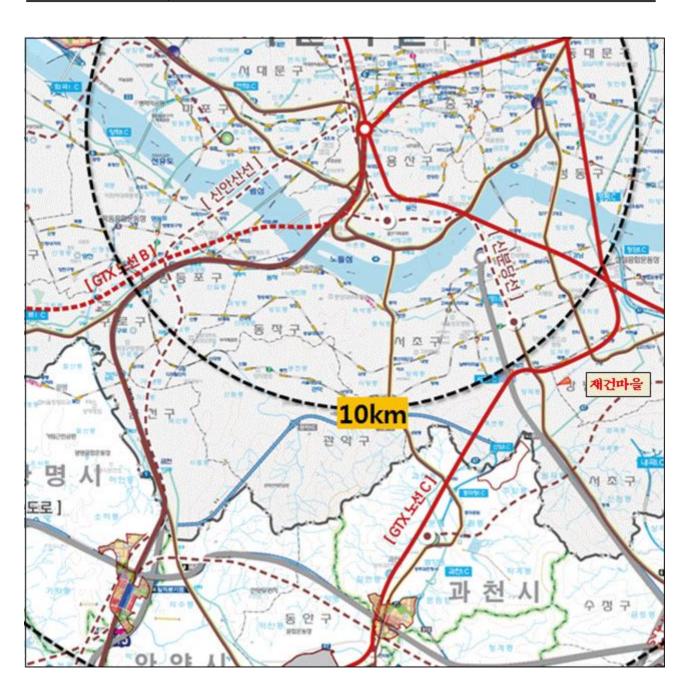
_	

소 재 지	•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 일원	
면 적	• 58천m² (18천평)	
건설호수	• 1,300호	
입지여건	• 지하철 오금역(3, 5호선 교차)과 도보 2분 거리(200m)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남	
개 발컨셉	• 오금공원 및 가락근린공원의 환경요소를 활용한 친환경 단지 조성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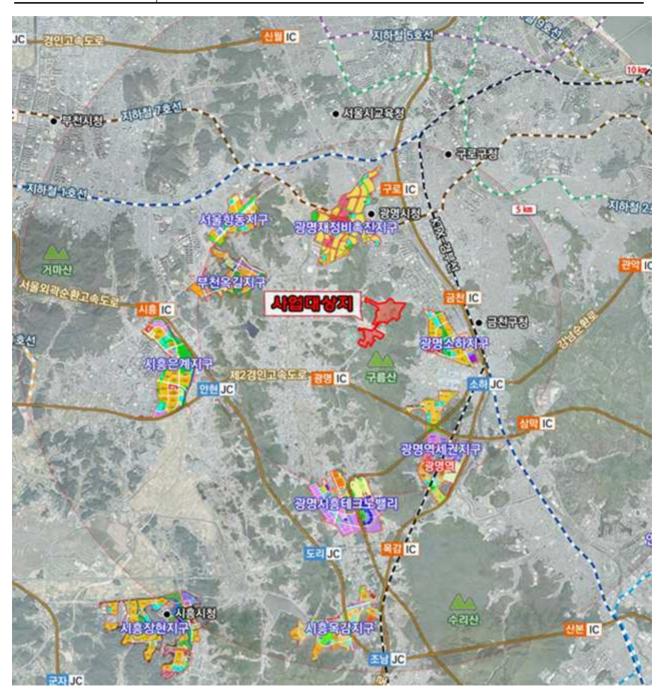
## 개포동 1266 (재건마을)

소 재 지	•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66 일원
면 적	• 13천m² (4천평)
건설호수	● 340호
입지여건	•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1km 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 양호
개 발컨셉	• 양재천 등의 환경요소를 활용한 친환경 단지 조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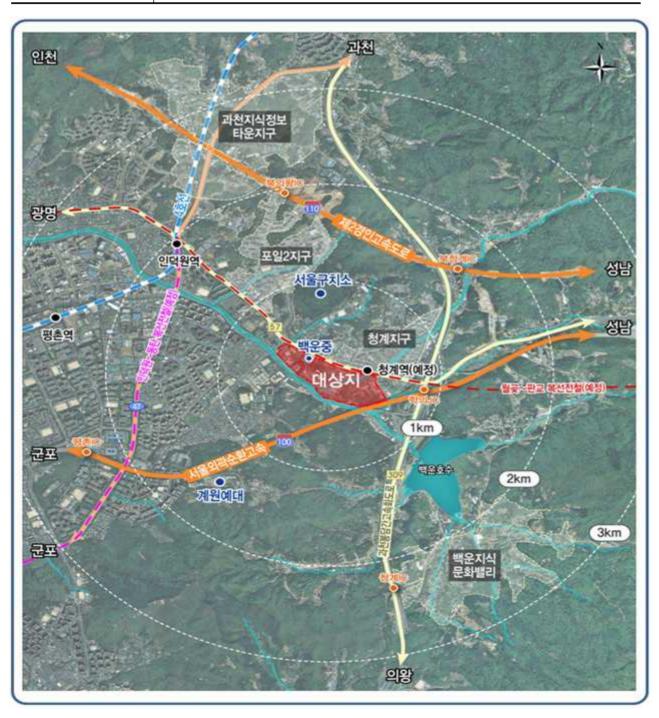
## 3 광명 하안2

소 재 지	•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일원
면 적	● 593천m² (179천평)
건설호수	• 5,400호
입지여건	• 제2경인고속도로(광명IC, 2.5km), 서해안고속도로(금천IC, 2.0km) 등 인접으로 교통 접근성 양호
개 발컨 셉	<ul> <li>한국수출산단(서울 구로구), 기아자동차(소하리) 등 주변 대규모 산업단지의 배후주거단지로 개발</li> <li>도덕산 구름산을 잇는 생태녹지축 연계를 통해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</li> </ul>



## 4 의왕 청계2

<b>소 재 지</b> ●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02번지 일원	
면 적	• 265천m <sup>2</sup> (80천평)
건설호수	<ul><li>2,560호</li></ul>
입지여건	•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(2.0km) 인접, 국지도 57호선 연접 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남
개 발컨 셉	<ul> <li>백운호수, 청계산, 학의천 등을 연계한 물길이 흐르는 친환경 정주공간 조성</li> <li>충분한 지족용지 등 일자리, 미래성장동력을 갖춘 스마트지구 조성</li> </ul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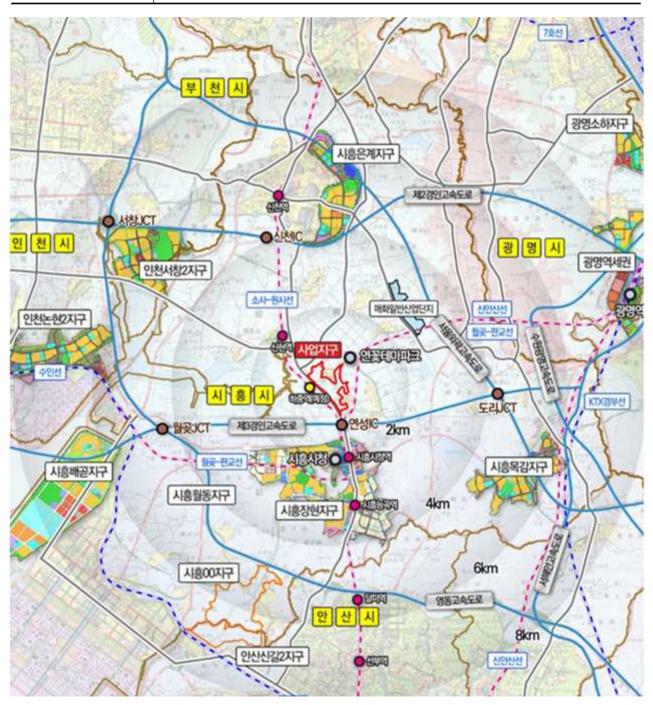
## 5 성남 신촌

소 재 지	•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
 면 적	• 68천m² (21천평)
건설호수	• 1,100호
입지여건	<ul> <li>복정역(8호선, 분당선 1.8km), 수서역(SRT, 3호선, 분당선, 3km)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양호</li> <li>용인서울고속도로(헌릉IC, 1.5km), 서울 외곽고속도로 (송파IC, 2.0km)가 인접하여 도심 접근성 양호</li> </ul>
개 발컨셉	<ul> <li>세곡지구와 연계한 강남수요 대체 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</li> <li>직주근접 및 서울권 출퇴근이 가능한 콤팩트 시티 조성</li> </ul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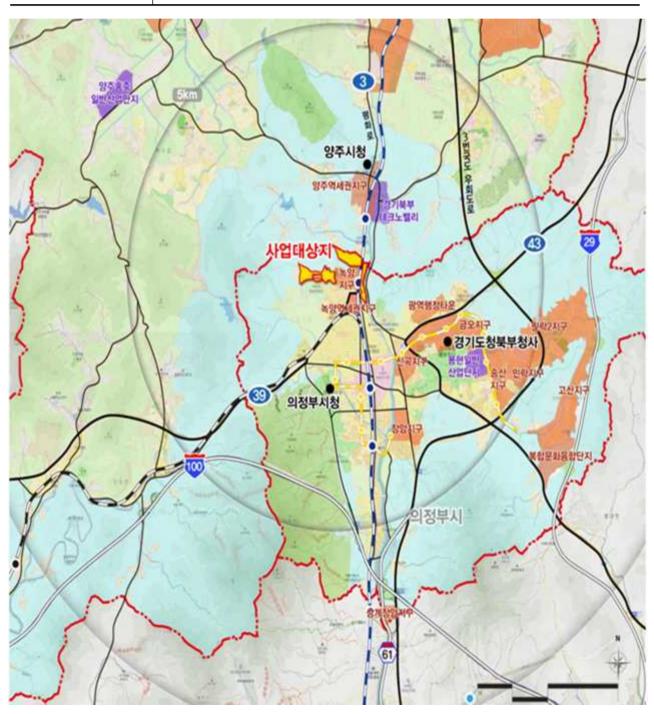
## 6 시흥 하중

소 재 지	•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	
면 적	● 462천m² (140천평)	
건설호수	• 3,500호	
입지여건	• 제3경인고속도로 및 소사-원시선 인접(신현역, 시흥시청역 2km 이내)으로 교통접근성 우수	
	• 시화국가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으로 배후수요 풍부	
개 발컨셉	• 지역 자산(관곡지, 연꽃테마파크) 및 하중역사(예정)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	



## 7 의정부 우정

소 재 지	•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58 일원
면 적	• 518천m² (157천평)
건설호수	• 4,600호
입지여건	• 지하철 1호선 녹양역 연접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양호
개 발컨셉	<ul> <li>자족시설 배치 및 신혼부부·청년층 위주의 일자리 연계형 주거단지 개발</li> <li>녹양역 역세권 고려하여 상업·업무·주거 복합개발 추진</li> </ul>



### 8 인천 검암역세권

소 재 지	•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일원	
면 적	• 793천m² (240천평)	
건설호수	• 7,800호	
입지여건	<ul> <li>검암역(공항철도, 인천지하철 2호선) 연접, 검바위역(인천 지하철2호선)과 1km내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 우수</li> <li>개발 완료된 청라지구 등 주변으로 젊은층의 주거수요 풍부</li> </ul>	
개 발컨셉	<ul> <li>도시첨단 산업, 물류 기능 도입 등 자족성 복합도시 조성</li> <li>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남북측 녹지축 구축</li> </ul>	

